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08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15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허종식 · 김주영
이해식 · 한정애 · 소병훈
김남희 · 윤후덕 · 김 윤
최혁진 · 박희승 · 이용우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하지만, 이러한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가 고령층 및 만성질환 증가와 같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도를 개선하여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 제도를 신설함(안 제2조제3호의2, 제16조

제2항 및 제19조제2항 신설).

나.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으로 함(안 제7조제1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608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제19조”를 “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”으로 한다.

3의2. “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”이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”을 “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”으로 한다.

제3장의 제목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

및 제2항”으로 한다.

- ②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은 간호사·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52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제17조의 제목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(이하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”를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이”로,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을”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의료행위의 범위)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「의료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질병·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·검사
2. 환자의 이송
3.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

4. 질병·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

5.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

6.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

7. 예방접종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
②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은 「의료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

제20조의 제목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제24조의 제목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을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중보건직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편입되는 공중보건직의사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복무 중인 공중보건직의사의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특례) 이 법 시행 전에 편입된 공중보건직의사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하되, 편입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· 2. (생 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3.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”이란 <u>제19조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	3. ----- <u>제1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9조제1항</u> -----.
<u><신 설></u>	<u>3의2. “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”이란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.</u>
4. “보건진료소”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<u>보건진료 전담공무원</u> 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·군수가 설치·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.	4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공중보건
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「병역
법」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
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
다.

②·③ (생략)

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
전담공무원

제15조(보건진료소의 설치·운영)

① (생략)

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
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, 보
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
무원으로 보한다.

③ (생략)

제16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
자격) ① (생략)
<신설>

② 제1항의 직무교육에 필요한
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
다.

제7조(의무복무기간) ① -----

-----군사
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한 2년---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
전담공무원 등

제15조(보건진료소의 설치·운영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보건진료 전담공무
원 또는 보건진료 전문전담공
무원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6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
의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
은 간호사·조산사 면허를 가
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
이 실시하는 52주 이상의 직무
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-----

-----.

제17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신분 및 임용)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하며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8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수교육(補修敎育)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9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)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「의료법」 제27조

제17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신분 및 임용)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(이하 “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”이라 한다)-----

-.
② -----

-----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이-----

-----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을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보수교육) ① -----
---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 의료행위의 범위)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「의료법」 제27

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
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질병·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·검사

2. 환자의 이송

3.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

4. 질병·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

5.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

6.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

7. 예방접종

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
② 보건진료 전문전담공무원은 「의료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.

1.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의료행위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

제20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
관할구역 이탈금지) ① 특별자
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
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
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
전담공무원에 대하여 관할구역
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해
당 보건진료소의 관사에 거주
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
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
있다.

제23조(지도·감독) ① (생략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
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
은 해당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
소장에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
의 의료행위를 지도·감독하게
할 수 있다.

제24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

제20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
관할구역 이탈금지) ① -----

-----보건진료 전

담공무원등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----

-----.

제23조(지도·감독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

----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---

-----.

제24조(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의

복무) <u>보건진료 전담공무원</u> 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지 방공무원법」에 따른다.	복무) <u>보건진료 전담공무원등</u> ----- ----- -----.
--	--